

#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회추경 예산편성후 보조내시된 국·도비 보조사업 및 전년도 결산분 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등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8,74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,52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,675백만원이 증액된 229,676백만원 특별회계는 148백만원이 감액되어 69,071백만원 임.

### 나.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89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1,48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△154백만원, 지방교부세 △72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78백만원임.

#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,953백만원(예비비 1,374백만원 포함), 재무활동 11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△392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△93백만원, 재무활동 △55백만원 임.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